

장학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향학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,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심전력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제3조(선정 및 지급시기) ① 장학 대상자 선정은 매 학기 단위로 등록기간 전에 장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② 모든 장학금의 지급은 연 2회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.(단, 근로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함)

제4조(지급절차) ①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당해연도 매 학기 초 장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장학금은 종류에 따라 등록금 감면이나 추후에 지급한다.

제5조(특전) 대학을 대표하여 대내외 활동에 있어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재해 기타 사정으로 학비부담이 곤란한 자에게 대하여는 별도로 수업료 감면의 특전을 부여한다.

제6조(자격규칙)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.

1. 제적
2. 휴학(단, 등록 후 휴학자는 제외임)
3.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(단, 해당 학기에 한함)
4. 기타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2 장 장학심의 위원회

제7조(위원) 장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 위원회를 둔다.

제8조(구성) 장학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2.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리 한다.
3. 위원은 교무처장, 각과 학과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

제 3 장 장학금

제9조(구분)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제10조(종류와 규정)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.

1. 백산장학 : ① 신입생 선발고사 합격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② 신입생 선발고사 합격자 중 본교와 입학 장학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교 출신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23.08.22.>
③ 신입생 선발고사 합격자 중 백산학원 산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23.08.22.>
2. 최우수장학 : 계열 내에서 최고득점자에게 한 학기 수업료의 1/2~1/3을 지급한다.
<개정 2024.08.06.>
3. 우수장학 : 각 학과에서 성적이 최우수한 자로써 평점이 3.8 이상인 자 1명에게 한 학기 수업료의 1/3~1/4을 지급한다.<개정 2024.08.06.>
4. 준우수장학 : 각 학과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로써 평점이 3.6 이상인 자 1명에게 한 학기 수업료의 1/4~1/6을 지급한다.<개정 2024.08.06.>
5. 실기장학 : 실기성적이 A이상인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수업료의 1/4~1/6을 지급한다.
6. 리더십장학 : 학생회 임원 및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.(단, 해당 임기동안에 한함)<개정 2024.08.06.>
7. 근로장학 : 교내에서 근로 봉사하는 학생에게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.
8. 보훈장학 :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한다.
9. 교직원장학 :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학기 당 기준 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 2.8 이상인 자에게 수업료의 1/2을 지급한다.(단, 신입생은 학점기준 없음)
② 백산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로서 본교 입학시 수업료의 1/2을 한 학기 지급한다.
10. 한가족장학 : 가족 중 2인 이상이 본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, 가족 중 1인(연장자)에게 수업료의 1/4을 지급한다.<신설 2023.10.24.>
11. 성적향상장학 : 전전 학기 학사경고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5이상으로 향상된 자에게 지급한다.<신설 2023.10.24.>
12. 홍보대사장학 : 홍보대사로 선정된 후 활동에 따라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.<신설 2023.10.24.>
13. 세계화장학 : 어학성적이 기준 성적보다 높은 자에게 정규 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.<신설 2023.10.24.>
14. 특별장학 : 대내·대외적으로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였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한다.<신설 2023.10.24.>

제11조(외부 장학금) 외부장학금이란 본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의 장학기관, 사회단체, 개인이 지급되는 위탁한 지원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총칭하고 그 선발은 교내 장학규정에 준한다.

제12조(장학금의 결정) ① 각 종류별 해당하는 장학 지급 금액은 등록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장학금이 중복될 시에는 1종의 장학금만 지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규정은 199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개정) 본 규정은 장학 위원회의 참석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규정은 1998학년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규정은 2023학년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규정은 2023학년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규정은 2024학년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